

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金汶泰議員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汶泰議員 총무재무위원회 金汶泰議員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5년 2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3월 3일 제2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고자하는 것으로 염리동 41-218호외 4필지 178㎡를 매각하고 공덕동 427-8호외 2필지 116㎡를 경찰청 소유의 현석동 1-5호 대지 657.7㎡로 교환하여 합정동 376-29호 대지 360.3㎡ 및 전물 162.8㎡를 상반기중 취득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元泰 金汶泰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기온차가 조석간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時 38分 散會)

○出席議員(29人)

金 元 泰	黃 泰 植	曹 熙 太
宋 潤 錫	金 星 煥	朴 柱 緒
李 天 撲	李 鍾 萬	李 奉 衡

具 又 石	韓 賢 惠	金 鍾 烈
沈 輽 泰	洪 性 煥	俞 南 烈
金 汶 泰	李 宗 一	鄭 然 宇
金 相 烈	李 康 泌	金 東 暉
尹 東 鉉	洪 吉 枝	田 炳 萬
李 仁 求	尹 正 鑄	金 裕 顯
尹 明 奎	權 五 範	

○出席公務員

總務局長	梁 石 龍
財務局長	文 忠 實
市民局長	尹 丙 汝
保健所長	金 永 浩
企劃豫算課長	李 殷 圭

(参照)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3. 2.

총무재무 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7회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95. 3. 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춘기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994. 12. 31에 공포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본 조례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명으로 함(안 제4조제1항)
-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마포구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직급별 정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와 일치되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제2항은 다른 법령과의 표현 방식을 통일하고자 자구의 배열을 바꾼 것이고,
- 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과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동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총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마포구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9
----------	-----

제출일시 : 1995. 2. 17.

제출자 : 마포구 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994. 12. 31에 공포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본 조례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명으로 함.(안 제4조 제1항)
-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마포구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12. 20. 법률 제4789호) 제15조, 제82조 내지 제84조, 제10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 제13조제2항제2호, 제21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상당의 별정직 또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직원의 정원) ①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명으로 한다.

②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중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을 “규칙”이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u>5급상당의 별정직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제3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u>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4조(직원의 정원)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직원의 정원) ①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명으로 한다. ②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u> 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	
○ 별정직	
- 비서(7급상당)	1
- 속기사(7급상당)	1
- 속기사(8급상당)	2
- 속기사(9급상당)	1
- 비서(9급상당)	1
○ 별정직 또는 일반직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 일반직	
- 지방서기관	1
- 지방행정주사	3
- 지방행정주사보	3
- 지방행정서기	3
- 지방행정서기보	2
○ 기능직	
- 8등급 지방기계원 또는 지방 전기원	2
-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표결사	1
-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
-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
- 9등급 지방방호원(방호)	1
- 10등급 지방방호원(방호)	1
- 10등급 지방운전원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실 사 보 고 서 1995. 3. 2. 총무재무 위원회	<p>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4. 12. 31에 공포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p>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실 5국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 3실(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 5국(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소속 24개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1. 심사경과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8일</p> <p>다. 상정일자 : 제27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5. 3. 2.)상정의결</p>	
2. 제안설명의 요지 <p>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춘 기</p> <p>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대 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p>	